

『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9년 3월 23일

나. 발 의 자

박세채 의원, 윤서규 의원, 한정우 의원, 이갑선 의원
구자근 의원, 허 복 의원, 김태근 의원, 우진석 의원
김도문 의원, 김영호 의원, 석호진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3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4월 6일

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세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10조제2항의 [별표1]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도내 타 시의 요금에 비하여 높음에 따라 이를 인하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목욕탕 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제10조제2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[별표 1]의 욕탕용 요금 인하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- 「하수도법」 제65조(사용료 등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성 근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10조제2항의 [별표1]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도내 다른 시에 비하여 높음에 따라 인하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목욕탕 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[별표1]의 욕탕용 요금 인하

○ 검토 결과

- 2007. 1. 11 업종 통·폐합 시 조정된 욕탕용 요금의 인상률이 도내 다른 시에 비하여 130~157% 높음에 따라 이를 인하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
- 공공하수도 사용료 중 욕탕용 사용료를 인하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목욕탕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
- 참고로,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뢰 결과 “원안가결” 처리되었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